#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20

발의연월일: 2021. 9. 28.

발 의 자: 안호영·강선우·김영주

송옥주 · 신동근 · 양기대

윤준병 • 이병훈 • 이수진(11)

임종성 · 홍성국 의원

(11인)

#### 제안이유

그동안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수도권매립지관 리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해오고 있었으나, 수도권매 립지의 포화 시점 도래에 대비한 대체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업영역이 수도권매립지소재지로 한정되어 대체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 수도권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기술과 운영 경험을 갖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역할이 제한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업무 범위를 현행 수도권매립지에서 수도 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목적을 변경함(안 제1조).
- 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명칭을 현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함(안 제7조).
- 다. 수도권자원순환공사의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해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자원순환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외사업을 추가함 (안 제19조).

#### 법률 제 호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를 "수도권자원순환공사를 설립하여"로, "폐기물"을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수도권매립지 및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함으로써 폐기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을 "수도권매립지등의 주변지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오류동·왕길동·백석동·경서동"을 "오류동, 왕길동, 백석동, 경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공 유수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3. "수도권매립지등"이란 수도권매립지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 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수도권매립지"를 "수도권매립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권매립지를"을 "수도권매립지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을 "수도권"으로, "매립에 필요한 복토재(覆土材)의 확보"를 "수도권매립지등의 설치·관리"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을 "(수도권매립지등의 환경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을 "수도권매립지등의 환경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도권매립지"를 "수도권매립지등의"로, "시행"을 "시행, 운영 및 재원조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도권매립지"를 "수도권매립지등의"로, "사항"을 "사항, 오염저감계획 및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도권매립지"를 "수도권매립지등의"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에 관한"을 "수도권매립지등의"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에 관한"을 "수도권매립지 등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가 관리계획을 세울"로 한다.

- 1. 수도권매립지등의 사용 현황 및 사용 계획
- 2. 수도권매립지등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반입기준 및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대책

제6조 중 "수도권매립지"를 "수도권매립지등"으로, "것을 제외하고는"을

"것 외에는"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도권매립지를"을 "수도권매립지등을"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한다.

제11조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한다. 제17조의2 중 "직무상"을 "직무 수행과정에서"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수도권매립지"를 "수도권매립지등"으로 하고. 같 은 항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을 "수도권매립지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수도권매립지"를 "수도권매립지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또는 수도권매립지"를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또는 수도권매립지등"으 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수도권매립지"를 "수도권매립지등"으로 하 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수도권매립지"를 "수 도권매립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수도권매립지 안의"를 "수 도권매립지등의 부지 내"로. "문화시설"을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 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 지 설비"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설치 · 관 리"를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화"로. "지방자치단 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11 호"를 "제6호, 제8호부터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13.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승인하는 사업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각 호의 사업을"을 "각 호 및 제2항의 사업을"로, "각 호의 사업과"를 "각 호 및 제2항의 사업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각호의"를 "각 호 및 제2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를 제35조로 하고,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30조부터 제3 4조까지로 하며,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로 한다.

제29조의2를 제34조의2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21조(인·허가등의 의제) 공사가 제2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 승인, 지정 또는 인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환경 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 1항에 따른 사업인정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허가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신고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 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 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墳墓) 의 개장(改葬) 허가
- 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 제22조(토지의 매입 등) ① 공사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② 공사는 제1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

른 토지 · 물건 및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제23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공사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그 밖의 환경개선 사업을 수행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각각 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공사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24조(타인의 토지 출입 등) ① 공사는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이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식물·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제25조(종전의 제20조)제4호 중 "제22조"를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3조"를 "제28조"로 한다.

제28조(종전의 제23조)제3항 중 "기산하여"를 "기산(起算)하여"로 한다. 제29조(종전의 제24조)제1항 중 "공사에"를 "공사는 수도권매립지등(둘 이상의 시·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한다)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도권매립지"를 "수도권매립지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도권매립지"를 각각 "수도권매립지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도권매립지"를 "수도권매립지등의"로 한다.

3. 수도권매립지등의 주변지역 주민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이 경우 주 민대표 수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 수와 같은 수로 한다.

제34조(종전의 제29조) 중 "것을 제외하고는"을 "것 외에는"으로 한다. 제34조의2(종전의 제29조의2) 중 "직무상"을 "직무 수행에서"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 법에 따른 공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2호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수도권자원순환 공사법」에 따른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법」에 따른 수도권자원순환공사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3제2항 전단, 제19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제3호 중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을 각각 "수도권자원순환공사의 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 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 제1조(목적) ----- 수도권자원 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 순환공사를 설립하여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 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 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 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수도권매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 립지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 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 │ 적으로 설치·운영함으로써 폐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 기물--- 수도권매립지등의 주 을 목적으로 한다. 변지역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 ---- 오류동, 왕길동, 백석 시 서구 오류동・왕길동・백 석동ㆍ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 <u>동</u>, 경서동 -----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 다. 2.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 2.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 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 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공유수면을 포함한다) 으로서 수도권매립지에 「폐 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을 말한다.

(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반입(搬入)하는 지역을 말한 다.

<신 설>

- 제3조(책무) ① 국가는 수도권에 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u>수도권매립지</u> 의 설치·관리 실태를 감독하 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도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자치구청장은 <u>매립에 필</u>요한 복토재(覆土材)의 확보 및

3. "수도권매립지등"이란 수도
권매립지 및 「폐기물관리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
제3조(책무) ①
수도권매립지
<u> </u>
<u>o</u>
②
수도권매
립지등을
③ <u>수도권</u>
<u>수도권매립</u>
지등의 설치·관리

주민 지원 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 리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 권매립지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이하 "종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계획
- 2.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 대책
- 3.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 리
- 4. 수도권매립지의 건설 및 운

   영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5.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 에 대한 지원 사업
- 6.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오염 저감(低減) 계획
- 7.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적 절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_\_\_\_\_

<삭 제>

-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 립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 기획) ① 제7조에 따른 수도권매 립지관리공사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 매립지 환경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수도권매립지 사용 현황
  - 2.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및 반입기준
  - 3. <u>수도권매립지</u> 기반시설의 공 사 시행에 관한 사항
  - 4.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보 4. 수도권매립지등의 ------

제5조(수도권매립지등의 환경관
리계획) ① 수도권자
원순환공사
수도권
매립지등의 환경관리계획
1. 수도권매립지등의 사용 현황
및 사용 계획
2. 수도권매립지등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반입량, 반입
<u> </u>

기준 및 폐기물의 자원화 촉

3. 수도권매립지등의 -----

-- 시행, 운영 및 재원 조달--

진 대책

전에 관한 사항

- 5. <u>수도권매립지</u> 사후 관리에관한 사항
- 6. 그 밖에 <u>수도권매립지의 관</u> 리에 관한 사항
- ② 제7조에 따른 <u>수도권매립지</u> 관리공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 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수도</u> 권매립지의 설치·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 한 <u>것을 제외하고는</u>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법인격) ① 수도권매립 지를 환경상 안전하고 효율적으 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 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 다)를 설립한다.
  - ② (생략)

사항, 오염저감계획
및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
원 사업
5. <u>수도권매립지등의</u>
6 수도권매립지등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② 수도권자원순
환공사가 관리계획을 세울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수도</u>
<u>권매립지등</u>
<u>것 외에는</u>
,
제7조(수도권자원순환공사의 설
립 및 법인격) ① 수도권매립지
<u> 등 을</u>
수도권자원
순환공사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유사	명칭 등	등의 사	용 금
지) 이 법(	게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수도	권매립지	기관리공	사 또
는 이와 유	-사한 명	병칭을 기	사용하
지 못한다.			

- 제17조의2(비밀누설 금지 등) 공 사의 임원 및 직원과 공사의 임 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u>직무상</u>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 기물의 처리
  - 2. <u>「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u> <u>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u>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의 설치· 관리
  - 3. 4. (생략)
  - 5. 다음 각 목의 결정 및 징수 가. <u>수도권매립지</u>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반입수수료
    - 나. (생략)
    - 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제	11조(유사 명	칭 등의	사용 금
	ス])		
	<u>수도권자</u>	원순환공	<del>7</del> 入}
제	· 17조의2(비밀 <sup>느</sup>	F설 금지	] 등)
,			
	직무 수행과정	에서	
궯	 19조(사업) ①		
<b>/</b> 1			
	1. <u>수도권매립</u>	<u>지등</u>	
	2. <u>수도권매립</u>	<u> 기등</u>	
	3.•4. (현행과	같음)	
	5		
	가. <u>수도권</u>	매립지등	<u>:</u>
	 나. (현행과		
	다. (연행과 다	/	장. 군수
	•		<u> </u>

- 6. <u>수도권매립지</u> 및 주변지역의 환경 관리
- 7.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 8. (생략)
- 9. 수도권매립지의 사후 관리
- 10. <u>수도권매립지 안의</u>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 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u>문화시설</u> 등의 설치 및 운영

11. 그 밖에 수도권매립지의 설11.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최・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나물의 처리 및 자원화-----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u> </u>
립지등
6. 수도권매립지등
<삭 제>
8. (현행과 같음)
9. 수도권매립지등
10. 수도권매립지등의 부지 내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11.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
물의 처리 및 자원화
기바기키다케 ㄸ느 ㄱ 바이

업무

12. 제1호부터 <u>제11호</u>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설계, 책임감리, 환경오염물질의 측정·분석 및 기술지원 등 부수(附隨)된 업무

#### <신 설>

- ② 공사는 제1항 <u>각 호의 사업</u>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u>각 호의 사업과</u>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 ③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u>각 호의</u> 사업을 위 탁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출자나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u> 자</u>
12 <u>제6호, 제8호부터</u>
제11호
13.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
나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환경
부장관이 승인하는 사업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③ <u>각 호 및 제2항</u>
의 사업을
<u>각 호 및 제2항의 사업</u>
과
<u>4</u>
<u>각 호 및 제2항의</u>
•
· <u>⑤</u> 제3항
•

- 제2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공사는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그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 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 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인・허가등의 의제) 공사가 제2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 면허, 승인, 지정 또는 인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따른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
   인정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 용허가

-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허가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신고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 처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 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

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 구역의 지정해제

-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 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제22조(토지의 매입 등) ① 공사 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 물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 다.

- ② 공사는 제1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신 설>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3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공사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그 밖의 환경개선 사업을 수행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각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공사로하여금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타인의 토지 출입 등) ① 공사는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식물·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의 사장"으

<u>제20조</u> (사업	재원)	공사의	재원은
다음 각 호	도의 자	금으로	한다.

- 1. ~ 3. (생략)
- 4. 제22조에 따른 차입금
- 5. 제23조에 따른 채권 발행으 로 조성한 자금
- 6. (생략)

제21조 · 제22조 (생 략)

### 제23조(채권의 발행) ①・② (생 략)

- ③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 ③ -----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 는 2년으로 완성된다.
- ④ (생 략)
- 의결에 앞서 제19조에 따른 사 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

#### ② (생략)

③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되

# 로 본다. 제25조(사업 재원) -----1. ~ 3. (현행과 같음) 4. 제27조-----5. 제<u>28조</u>-----6. (현행과 같음) 제26조 · 제27조 (현행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음) 제28조(채권의 발행) ① • ② (현 행과 같음) -- 기산(起算)하여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운영위원회) ① 이사회의 제29조(운영위원회) ① ----------- 골사는 수도권매립지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등(둘 이상의 시·도에서 발생 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폐 기물처리시설로 한정한다)별로 ② (현행과 같음)

(3) -----

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 1. · 2. (생략)
- 3.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주 민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6명

- 4. 환경부장관과 <u>수도권매립지</u> 주변지역의 주민대표가 추천 하는 관련 전문가 각 1명 및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 1명
- ④ ~ ⑥ (생 략)
-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u>수도권매립지</u>에 반입되는 폐 기물의 반입수수료
- 2. <u>수도권매립지</u>에 반입되는 폐 기물의 종류, 반입량, 반입 기 준 및 반입 대상 구역
- 3. <u>수도권매립지</u> 주변 환경 보 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수도권매립지등의 주변지역
주민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이
경우 주민대표 수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 수와 같은 수로
<u>한다.</u>
4 수도권매립지
등의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u>.</u>
1. <u>수도권매립지등</u>
2. 수도권매립지등
3. <u>수도권매립지등의</u>
4. (현행과 같음)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25조 ~ 제28조 (생 략) 제30조 ~ 제33조 (현행 제25조부 터 제28조까지와 같음) 제29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제34조(「민법」의 준용)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것 외에는-----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제29조의2(벌칙) 제17조의2를 위 제34조의2(벌칙) -----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 직무 수행에서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현행 제30조와 같음)

제30조 (생략)